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07호 2021. 6. 10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79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06월 10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도로명주소법」(법률 제17574호, 2020. 12. 8. 공포)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 :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- 개정 :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나. 목적,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다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
라.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비용에 대한 사항(안 제4조)

마.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
바.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2조)

사.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(안 제13조)

아. 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(안 제14조)

자.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(안 제15조)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예천군 종합민원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의 그 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종합민원과,
지적재조사팀
- 전화 : 054-650-6924, 팩스 : 054-650-6149
- 전자우편 : minjee91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도로명주소법」(법률 제17574호, 2020. 12. 8. 공포)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○ 현행 :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
○ 개정 :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나. 목적,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다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
라.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비용에 대한 사항(안 제4조)

마.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
바.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2조)

사.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(안 제13조)

아. 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(안 제14조)

자.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(안 제15조)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명주소법」(법률 제17574호, 2021. 6. 9. 시행)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

마. 입법예고 : 6월 중 입법예고 실시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사. 성별영향평가 :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

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

1. 도로명: 모든 도로의 명칭
2. 도로명과 기초번호: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
3. 도로명주소: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
4.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: 법 제22조제6항 외에 예천군에서 일 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·변경의 기초단위
5. 국가지점번호: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 재 등의 위치표시
6. 사물주소: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

제3조(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) ① 군수는 법 제

13조제4항 및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예천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

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4조(광고의 비용)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무료
 - 가. 예천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
 - 나.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
 - 다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유료: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.

제5조(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)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
2.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), 여객자동차터미널, 공항 등에 설치·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
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

4. 예천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보급
5.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예천군 주소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

1. 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
2. 주소정보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예천군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록 작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심의결과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손해배상 공제 가입)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)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수건, 물티슈, 칫솔세트, 손톱깎이세트, 볼펜, 보조배터리, 우산, USB, 물병, 머그컵, 티슈, 수첩, 부채, 기타 물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민방위·예비군 교육, 각종 단체의 회의·행사·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예천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위탁)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
2.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·재교부에 관한 사항
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4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배포
 5.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 6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
 7.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8. 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
 9. 영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 10. 영 제61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주소정보시설의 종류, 수량, 위치
 2. 계약기간 및 금액
 3.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
 4.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
 5. 주소정보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
 6.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
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둔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예천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종 합 민 원 과	
연 락 처	650-6924